



배포 일시	2022. 10. 27.(목)		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종오(044-201-3817) 팀 장 양찬운(044-201-4770)
		담당자	사무관 장상준(044-201-4756) 성경림(044-201-3813)
보도일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## 국토부는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 내용 (한국경제, 10.27) >

◆ 잠자는 국토부의 택시 대란 대책

- 탄력 호출료 인상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지연 중
- 파트타임 근로는 택시발전법 개정이 필요
- 택시 유형별 전환 요건 폐지, 친환경 고급택시 공급 확대 등은 내년 상반기 시행
- 법인택시 리스제, 전액관리제 개선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

-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초 발표한 「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(10.4)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우선, 심야시간대(22~03시) 탄력 호출료와 관련하여 각 플랫폼사는 그간 탄력 호출료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진행해왔으며,
  - 그 결과, 관련 준비가 완료된 일부 플랫폼 업체(반반택시)가 내일(28일) 먼저 출시할 예정이고, 이후 다른 플랫폼 업체(타다, 티머니, 카카오 등)들도 다음주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-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26일(수)부터 심야 운행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, 탄력 호출료와 함께 단기간 내 택시 공급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- 아울러, 심야시간 택시기사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택시운전자격 보유자의 파트타임 근로 허용은,

○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, 현행 택시 발전법령 및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**별도 개정 없이 가능\***합니다.

\* 택시발전법(제11조의2)은 간주 근로시간에 기반한 전일 근무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, 실 근로시간에 기반한 파트타임 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가능

○ 내일(28일), 전국 법인택시 연합회 등 택시 업계에 동 사항에 대한 **유권 해석 내용을 공문 발송**할 예정으로 파트타임 근로 허용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□ 한편, **택시 유형별 전환 요건 폐지**(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사항) 및 **친환경 고급택시 확대**(택시 친환경차 고시 개정사항)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심야택시 공급력을 확대할 계획으로,

○ 당초 대책 발표 시 목표로 한 내년 상반기 시행에 문제 없도록 국무 조정실 사전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□ 법인택시 리스제, 전액관리제 등 노·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는

○ 국토부, 지자체, 택시 업계, 노조, 전문가가 참여하는 **협의체**를 통해 **합리적인 제도 방향**을 강구해나갈 계획으로, 이미 18일(화) 첫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에 착수하였습니다.

□ 앞으로도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모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하여 국민들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